

예산총칙

2018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14,660,000	9,439,800
일반회계	308,700,000	9,261,000
특별회계	5,960,000	178,800
기타특별회계	5,960,000	178,80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610,000	18,300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	80,000	2,400
주차장사업특별회계	5,113,000	153,390
지하수 관리 특별회계	157,000	4,71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603,446천원으로 한다.

(일반예비비 2,606,446천원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965,196천원, 내부유보금 1,032,267천원)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